

#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5. . .
발 의 자	이정희 의원

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  
(이정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: 2025. . .

발 의 자: 이정희 의원(1인)

찬 성 자: 김낙관·김민성·김영태·김정도  
박세채·장세구 의원(6인)

## 1. 제안이유

구미시에 존재하는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·관리하고, 이를 활용함으로써 민족문화의 계승과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며,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명 개정

나.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
다. 경비의 보조(안 제5조)

라. 실태조사 및 기록화(안 제6조)

마. 국가유산 교육(안 제7조~제8조)

바. 국가유산 활용사업(안 제9조)

### 3. 조례안: 붙임

### 4. 참고사항

#### 가. 관련 법령

- 1)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4조, 제11조, 제14조, 제25조, 제27조
- 2)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2조의2, 제22조의6, 제43조, 제72조
- 3) 「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4)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5)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나. 부서검토: 문화예술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##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「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구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국가유산기본법」,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,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구미시 관할 구역 내 소재한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국가유산”이란 구미시 관할구역에 소재하면서 「국가유산기본법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·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·예술적·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·자연유산·무형유산을 말한다.
2. “지정문화유산 등”이란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

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유산과 「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1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경상북도지정문화유산, 같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정한 경상북도문화유산자료를 말한다.

3. “등록문화유산”이란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등록한 유산과 「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39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등록한 유산을 말한다.
4. “지정향토유산”이란 구미시에 소재하면서 국가유산청장 및 경상북도지사가 지정 또는 등록한 유산 이외의 향토유산 중 구미시장이 지정한 향토유산을 말한다.
5. “등록근현대문화유산”이란 「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장이 등록한 유산을 말한다.
6.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「국가유산기본법」,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,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① 이 조례는 구미시 관할구역 내 소재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적용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우선 적용

한다.

1. 국가유산청장 및 경상북도지사가 지정 또는 등록한 국가유산
2. 각 종별 지정향토유산
3. 구미시장이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
4. 매장유산
5. 기타 관련 법령 또는 별도 조례에 따라 보호되는 국가유산

**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**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구미시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국가유산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
2. 국가유산 보수·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
3. 국가유산 교육 및 활용 방안
4. 연차별 예산투자 및 행정지원 계획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경비의 보조)** ① 시장은 국가유산의 보존·활용을 위하여 국가 및 경상북도의 재원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체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다.

1. 국가유산의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, 보존·관리를 위한 활동
2. 국가유산을 활용한 교육, 공연, 체험 프로그램

3. 전통예절, 의례, 민속행사 등 무형의 유산에 대한 보존·계승 활동
4. 국가유산의 발굴·조사, 사료의 수집·보존·발간, 역사인물 연구 등 학술연구 활동
5. 그 밖에 시장이 국가유산의 보존·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2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원한다.

**제6조(실태조사 및 기록화)** ① 시장은 지정국가유산등·등록문화유산과 구미시 지정·등록향토유산에 대해 현황 파악,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고 그 기록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시 국가유산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에게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국가유산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시장이 정하며, 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

**제7조(국가유산 교육의 진흥)** ① 시장은 국가유산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25조 및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에 해당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국가유산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, 교육기관, 시민단체,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국가유산 교육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, 필요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그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.

**제8조(국가유산 교육의 지원)** ① 시장은 국가유산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국가유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·개발을 지원하고, 교육 활동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9조(국가유산 활용사업)**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국가가 공모하는 국가유산 활용사업
2. 국가유산 해설·교육 프로그램 운영
3. 국가유산을 활용한 전시회·학술대회 등 문화행사 개최
4. 국가유산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축제 연계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.

1. 국가유산과 연관된 유적·유물이나 이야기 등 내재적 가치를 융·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, 이를 지속가능한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
2. 국가유산의 특색을 살린 특화된 프로그램
3.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향토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
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10조(유관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)** 시장은 국가유산청, 경상북도청, 교육기관, 구미문화원, 구미문화재단,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「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 내용 중 “무형문화재 제27호”를 “무형유산”으로 한다.

② 「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」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시·도지정문화재”를 “시·도지정유산”으로 한다.

③ 「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“문화재에 대한 감면”을 “문화유산에 대한 감면”으로, 「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를 「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로, “문화재”를 “문화유산”으로, “문화재보호구역안”을 “문화유

산보호구역안”으로 한다.

④ 「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4호 중 “문화재”를 “국가유산”으로 한다.

⑤ 「구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문화재”를 “국가유산”으로 한다.

⑥ 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호 중 “문화재”를 “국가유산”으로 한다.

# 관계법령

## □ 「국가유산기본법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·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11조(국가유산에 대한 경비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정·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,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5조(국가유산 교육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·습득하고 국가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

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국가유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 및 인증제도 등을 실시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27조(산업 육성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·제작·유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·창업 등을 촉진시키고 국가유산분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 □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

**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** ① 국가는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의 보호물·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민은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22조의2(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1.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
2.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·보급
3. 문화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
4.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유산교육의 지원
5.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
6.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22조의6(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인증 등) 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유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다.

②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.

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내용·교육과목·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인증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
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.

⑥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5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⑦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**제43조(기록의 작성·보존)** ①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.

**제72조(경비부담)** 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·도지정 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·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·관리·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## □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
## □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·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자연유산의 소유자, 관리자 및 관리단체(이하 “소유자등”이라 한다)는 자연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## □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국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# 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 : 문화예술과

조 례 명

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 □ 검토 사항

- 근거 법령
-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4조, 제11조, 제14조, 제25조, 제27조
-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2조의2, 제22조의6, 제43조, 제72조
-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## □ 주요 사항

-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- 경비의 보조(안 제5조)
- 실태조사 및 기록화(안 제6조)
- 국가유산 교육(안 제7조~제8조)
- 국가유산 활용사업(안 제9조)

## □ 검토 결과

- 근거 법령 취지에 부합함
- 국가유산 체제 변환에 맞춰 조례 개정함이 타당함

## □ 조례 개정에 따른 향후

- 기대효과 : 국가유산의 보존과 교육 등의 활용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사료됨
- 소요예산 :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문 제 점 : 없음

#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재정수반요인

- 동 조례안 제5조(경비의 보조)에 의거 국가유산을 보존·활용하는데 있어서 행정적 지원과 범위는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

## 3. 미첨부 사유

- 각 국가유산 등과 관련한 사업 보조금은 산출내역 결과에 따라 예산이 달라 추계가 어려움

## 4. 작성자

- 문화예술과 국가유산팀 박은진(☎054-480-6641)